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미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담배사업법」 상 담배* 아님 <p>* "담배"란 <u>연초의 잎을</u>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… 제조한 것을 말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신 설)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합성니코틴 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("26.4.24. 시행)"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담배사업법」 개정으로 합성니코틴도 담배*에 포함 <p>* "담배"란 <u>연초나 니코틴을</u>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… 제조한 것을 말한다.</p> <p>< 「담배사업법」 기재위 심사시 부대의견 ></p> <p>"합성니코틴 제조·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<u>개별소비세</u> 등 제세부담금 한시적 감면 추진"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개별소비세법」 개정(2년간 50% 감면) ○ 「지방세법」도 담배소비세 세율 규정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년간 50% 감면하는 규정 신설

□ 개정 내용

- (감면수준) 담배소비세의 50% ※ 지방교육세(담배소비세의 43.99%)는 자동 감면
⇒ 지방세법 §52①(세율) 단서 신설 :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
- (감면기간) 법 시행일로부터 2년
⇒ 부칙 유효기간 : 지방세법 §52①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

시기구분	공포	시행(공포일부터 4개월 후)	감면 종료(시행일부터 2년 후)
	'25.12.23.	'26.4.24.	'28.4.23.
		→ 합성니코틴 50% 감면	← → 정상과세